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98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조정훈 · 서천호 · 김재섭
박충권 · 김용태 · 김대식
최수진 · 윤용근 · 엄태영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집단민원의 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이라 정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2.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집단민원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담당관(이하 “갈등조정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집단민원의 접수,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의 절차, 갈등조정담당관의 지정, 기관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민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5조의2(집단민원의 조정) ①</u> <u>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이라 정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u>1. 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u> <u>2.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u> <u>3.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권익위원회에 조</u>

정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원회
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조
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
원을 집단민원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담당관(이하 “갈등조
정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하여 집단민원의 접수, 처리현
황 파악 및 점검, 관계기관 협
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조
정 과정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
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의
절차, 갈등조정담당관의 지정,
기관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